

인사보상위원회 규정

제 정 2024.4.5.

제 1 조 목적

이 규정은 남양유업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)의 인사조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적용범위

위원회에 관하여 관련 법령, 회사 정관(이하 “정관”)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

- ① 위원회는 회사의 인사,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,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)은 회사의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사의 이사 총 3인으로 구성한다. 위원의 사임, 해임, 퇴직 등으로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위원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선임한다.
-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시, 인사/보상 및 조직 관련 담당임원 또는 담당자를 인사조직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.

제 4 조 의장

- ① 위원회의 의장(이하 “의장”)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위원으로 한다.
- ②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의장이 정하는 자,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 회의의 소집, 개최 및 결의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1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②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, 의장이 소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위원들은 함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사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한다. 다만,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, 전자메일, 서면 기타 의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④ 위원회는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- ⑤ 위원회는 담당 이사, 감사, 집행임원, 기타 임직원이나 외부 자문사, 전문가 등 관계인으로부터 결의 대상에 대한 설명 및 보고를 받을 수 있다. 또한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상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당 이사, 감사, 집행임원 기타 임직원 또는 외부 자문사, 전문가 등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협의 또는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6 조 역할

- ① 위원회는 (i) 회사의 조직 및 권한, 역할, 책임의 구성과 분배, (ii) 임원의 인사, KPI 설정, 성과평가, 보수나 징계 관련 사항 협의 및 심의, (iii) 기타 이사회규정 및 이 규정에서 정하거나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에 권한을 갖고, 회사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를 심의 및 의결한다.
- ② 위원회는 회의에서 보고, 심의 및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그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 7 조 결의사항

- ① 위원회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심의 및 의결한다.

1. 회사조직의 설치 및 폐지, 조직개편 계획 수립

2. 경영상 필요한 인사 관련 사규, 사칙, 지침, 인사제도의 제정 및 개폐
3. KPI의 설정
4. 임직원의 성과급, 인센티브, 보너스, 급여 및 보수, 퇴직급여, 복리후생, 스톡옵션 등 관련 사항 결정
5. 취업규칙 개정,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
6. 인사 관련 사항에 대한 내부 협의, 의견수렴 및 발표, 공표
7. 휴직, 복직에 관한 사항
8. 징계에 관한 사항
9. 인원계획 변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용 또는 해고
10. 임원의 채용
11. 기타 이사회규정 또는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

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회사의 인사와 관련된 주요 업무집행 관련 사항

③ 위원회 결의사항은 별도의 위임전결규정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 8 조 의사록

위원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제출된 자료 및 심의경과 등 업무처리 기록을 유지하고, 그 경과 내용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 한다.

제 9 조 개정

이 규정은 이사회결의로 개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.